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01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현정 · 복기왕 · 최민희
이용우 · 진성준 · 허영
이주희 · 김남근 · 황명선
조정식 · 김용만 · 남인순
이강일 · 유동수 · 이인영
박지혜 · 박수현 · 염태영
차지호 · 안도결 · 김문수
장경태 · 송옥주 · 박홍배
조인철 · 박정 · 김윤
강준현 · 문진석 · 최혁진
박상혁 · 이정문 · 박범계
권향엽 · 백승아 · 박용갑
이수진 · 이재강 · 안태준
박홍근 · 한창민 · 문금주
김기표 · 김승원 · 박지원
의원(4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각종 불
공정 · 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음. 이러한 기만적 행위들은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

그러나 현행 부동산 관리체계는 조사권과 정보가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금융, 조세,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얹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별로 가용한 정보와 권한이 상이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사의 중복이나 공백이 반복되는 실정.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사·단속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 (안 제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부동산감독원 직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부동산감독원 직원)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부동산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별표 1(제20호는 제외한다)의 각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4(부동산감독원 직원) 부</u> <u>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u> <u>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u> <u>지방공무원으로서, 부동산감독</u> <u>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u> <u>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u> <u>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u> <u>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u> <u>「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u> <u>에 관한 법률」의 별표 1(제20</u> <u>호는 제외한다)의 각 법률에</u> <u>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u> <u>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u> <u>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그</u> <u>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u> <u>직무를 수행한다.</u>